

#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- 연말정산 시기 : 계속근무자 ⇒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(소득세법§134, §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납부)  
※ 2020. 3.10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(반기 납 신고자도 가능)
-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: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종교인소득(3월10일), 그 외 (2월 말일)

(연간근로소득-비과세소득)  
= 총 급 여 액

- 근로소득공제

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  
= 근로소득금액

- 인적공제

- 연금보험료공제

- 특별소득공제

- 그 밖의 소득공제

과세표준

기본세율  
(6~42%)

산출세액

- 세액감면

- 세액공제

표준세액공제 (13만원)

특별소득공제 ·  
특별세액공제 ·  
월세액공제를  
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= 결정세액

- 기납부세액

= 납부 또는 환급세액

	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의 40%	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의 15%	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의 5%	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의 2%	
기본공제 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</li> <li>직계존속 : 만 60세 이상(1959.12.31.이전 생)</li> <li>직계비속·동거입양자 : 만 20세 이하(1999.1.1.이후 생)</li> <li>형제자매 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</li> </ul>		
추가공제 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로우대 공제 : 만 70세 이상(1949.12.31.이전 생) 1인당 100만원</li> <li>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</li> <li>부녀자 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</li> <li>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 적용)</li> </ul>		
연금보험료공제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공제</li> </ul>		
보험료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·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</li> <li>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③주택마련저축납입액</li> <li>한도 : ①+② = 300만원</li> <li>①+②+③ = 1800만원 · 1500만원 · 500만원 · 300만원</li> <li>③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, ※ 뒷면 참조</li> </ul>		
주택자금 공제산식 : (④×40%) + ⑤		
개인연금저축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2000.12.31.이전 기입) 공제액 : 연간납입금액의 40% (한도 : 72만원)</li> <li>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</li> <li>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</li> </ul>		
주택마련저축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저축 · 주택청약종합저축(연 240만원 이하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연 15만원 이하)</li> <li>공제액 : 납입금액의 40%(한도 :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 *총급여 7천만원 이하</li> <li>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 : 종합소득금액 50%)</li> <li>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</li> <li>신용카드 일반 : 15% ·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: 40%</li> <li>현금영수증 · 직불카드,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: 30%</li> </ul>		
* 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: 19.7.1.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		
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 : 400만원, 벤처 1,500만원)</li> <li>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(한도 : 1,000만원)</li> <li>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 : 240만원)</li> </ul>		
조세조약상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청년 90%, 청년 외 70%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어민교사,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</li> <li>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· 5년, 150만원 한도</li> <li>대상 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일직장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)</li> <li>외국인 기술자 감면</li> <li>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</li> </ul>		
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		
근로소득세액공제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%, 130만원 초과 분 30%공제</li> <li>한도 : 총급여액 3천3백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66만원), 7천만원 초과(50만원)</li> </ul>		
자녀 세 액 공 제 (손자녀 적용불가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 : 30만원+2명 초과 1인당 30만원</li> <li>출생·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</li> </ul>		
*자녀세액공제 대상 : 7세 이상의 자녀(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)		
연 금 계 좌 (공제율 12% · 15%)		
보 험 료(공제율 12% · 15%)		
의 료 비 산식 : (④+⑤) × 15 · 20%		
교 육 비(공제율 15%) (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)		
기 부 금 (공제율 100/110 · 15 · 25 · 30%)		
납세조합공제 외국납부세액		
월세액(공제율 10 · 12%)		
특별세액공제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·전액(대학원 포함) ·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대학원제외)</li> <li>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한도(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</li> <li>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</li> </ul>		
* 정치금기부금 : 10만원 이하(100/110), 10만원 초과 15%(3천만원 초과 25%)		
* 법정·지정기부금·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(1천만원 초과 30%)		
* 한도 : 법정·정치자금(전액), 우리사주조합·근로소득·정치·법정 × 30% 지정종교외(⑦×30%), 종교(⑦×10%+MIN(⑦×20%, 종교외단체 기부액))		
* 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% 공제</li> <li>한도 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 / 근로소득금액)</li> </ul>		
*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기 3억원 이하의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%공제(한도 75만원)		
*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)는 12% 적용		

\*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(요약)

## [소득·세액 공제요건]

구분	공제요건				
	나이요건	소득요건 (100만원 이하)	동거 요건		
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
기본공제	본인	x	x	x	
	배우자	x	o	x	
	직계존속	60세 이상 ( <u>99.12.31. 이전</u> )	o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 <u>99.1.1. 이후</u> )	o	x	
	장애인 직계비속 의 장애인배우자	x	o	x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o	o	o
	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x	o	o	o
	위탁아동	18세 미만	o		
	장애인	x	o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( <u>49.12.31. 이전 生</u> )			
추가공제	부녀자(50만)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			
	한부모(100만)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*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			
	연금보험료 공제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
특별세액공 제	신용카드 등	x	o		
	보장성보험료	o	o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
	의료비	x	x		
	교육비	x	o		
표준세액공제	기부금	x	o	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	
	표준세액공제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

\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
\* 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

\* 정차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

\*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[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]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함,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

##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]

구 분	내 용
공제 대상자	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연령제한 없음) ※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공제율	① 신용카드(15%) 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* 사용분 (30%) *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③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(40%)
공제금액 계산	① 신용카드 등사용금액*+신용카드+전통시장사용분+대중교통이용분 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* 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 ② 공제액 = [①의 사용액 * 15%(30%·40%)] - 총급여액의 25%
한도액	MIN(총급여액×20%, 300만원)* * 총급여액 7천만원 ~ 1.2억원이하(250만원), 1.2억원 초과자(200만원) · 한도추가·전통시장(100만원), 대중교통(100만원)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(100만원)
공제제외	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조·증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※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④ 조세, 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 ⑥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(중고차는 가능) ⑦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

## [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]

구 분	특별세액공제 항목	신용카드공제
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	취학전 아동 결제한 학원비 그 외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	기부금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
## 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세액공제	
구분	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2②	주택임차입금 월리금상환액 (소득세법 52조④)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(소득세법 52조⑤)	
공제 대상	·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 한 청약저축 불입액	·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근로자)가 국민주택규모주택을 대출기관, 보험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 자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	·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·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이자액공제	
기타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	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, 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②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	·근로소득이 있는 ·무주택 세대주로서 ·국민주택규모 또는 기 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	
요건	·청약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주택청약종합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(월 15만원 이하)	〈치입금 요건〉 1) 대출기관 차입 시 : 입주일, 전입일(경신, 이주 포함)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2) 거주자 차입 시 :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.1%이상의 이자율로 대부 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	·총급여 7천만원 (종합소 득금액 6천만원) 이하 ·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·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 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 소지가 같은 경우	
대상 주택	(‘99.12.31.이전 가입자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 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 유시는 공제가능	·국민주택규모 ·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·국민주택규모주택 ·주거용 오피스텔 ·주거용 고시원 *부양가족명의 임차주택 공제가능	
공제 한도	납입액의 40%	원리금 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	월세액의 10(12)%
증명 서류	연 300만원 한도			
주의 사항	·주택 청약 종합 저축 (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억년 2월 까지 제출)	·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·주민등록표등본 ·기주자차입 시금 전소 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 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증빙 할 수 있는 서류 (공시가격 알리미)	·주민등록표등본 ·임대차계약서 사본 ·월세액 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	·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 약증서의 주소지가 일 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

\* 2019.12.31.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

##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

■ 서비스 오픈 일정 2020. 1. 15. 이후 제공 예정

■ 제공되는 소득·세액 공제 항목

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

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
- 공인인증서 이용 흠텍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간소화

■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(2019년도 일부)

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  
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\* 후 조회 가능

\* 제공동의 신청 방법

- 흠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(조회/발급→연말정산 간소화)  
- 흠텍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(연말정산→연말정산 제공동의)  
- 세무서 방문 신청(제공동의 신청서 제출)

\*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